

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진단 안내서

1. 전기안전점검

- 법적근거 : 산업통상자원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4조,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
- 구분 : 기본형(전기실), 선택형(현장 분전반), 종합형(전기실 + 현장 분전반)
- 정전 시 전 항목에 대하여 측정 및 점검, 무정전 시 절연저항 및 계전기 항목은 제외

직무고시 필수 항목	직무고시 해당 시 항목
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, 저압 전기설비 점검, 고압 전기설비 점검, 변압기 점검,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, 예비발전설비 점검, 적외선 열화상 측정, 전원품질분석	태양광발전설비, 전기저장장치(ESS), 풍력 발전설비, 연료전지 발전설비, 수력발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,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, 무정전전원장치(UPS) 점검

- ※ 기본적으로 연차(정밀점검)에 대하여 점검(1회)을 실시하고 월차, 분기, 반기(정기점검)까지 할 경우 별도 협의
- ※ 고용노동부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한 전기안전점검 포함

2. 화재진단

- 전기와 소방에 대한 법정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실시하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전기, 소방, 위험물, 가스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화재를 예방

분야	진단 기준	진단 방법
전기	전기안전관리법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 전기설비기술기준, 전기설비 검사·점검기준(KESC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	육안, 열화상 및 초음파 카메라, 누설전류계, 접지 및 절연저항계, 멀티테스터 등 장비 활용
소방	소방시설법, 화재예방법,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),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),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기준 등	육안, 소방계획서 검토, 시뮬레이션(화재, 피난)
위험물	위험물안전관리법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	육안, 초음파 유량계, 초음파·도막 두께측정기 등 장비 활용
가스	고압가스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, 액화석유가스법, 수소법,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기준 등	육안, 가스누출감지기, 초음파 카메라 등 장비 활용

- ※ 해당 진단 수행 시 소방시설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으로 갈음될 수 없음

3. 전기매뉴얼

- 전기매뉴얼 구축으로 전기안전관리규정, 전기작업계획서, 전기작업지침, 전기시방서, 전기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

4. 전력진단

- 전기시설물 및 계통이 대형화, 복잡화됨에 따라 전기시설물에 대한 사고예방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,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단
- 전기 계통진단, 전력 케이블진단, 고조파 장애진단, 보호계전 시스템진단, 기타 진단

□ 담당자 : 대한산업안전협회 진단컨설팅본부 이준하 차장

□ 연락처 : HP) 010-8584-8782, TEL) 02-860-7089, E-mail) diaong@safety.or.kr